

『주주 귀하』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2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일 시 : 2023년 3월 31일 (금) 오전 9시

2.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9-22, A동 505-2호
당사 회의실

3.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1) 감사보고
- 2) 영업보고
- 3)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동권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4.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 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 행사: *개인주주: 주총참석장, 위임장-서명(신분증 사본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주주: 주총참석장, 위임장-인감(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2023년 3월 17일

주식회사 나라켄
대표이사 이동권
(직인생략)

[별첨 1]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 이사의 선임

성명 (생년월일)	주요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 관계	법정상 결격사유 유무
이동권 (65.01.14)	서울대학교 고분자재료 박사 (前) (주)메크로디엠 대표이사 (現) (주)나라캡 대표이사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상법 제388조 와 당사 정관 제39조에 의하여 이사의 보수한도를 아래와 같이 승인받고자 합니다.

전기 이사 보수 한도액 : 20억원

당기 이사 보수 한도요청액 : 20억원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상법 제415조 와 당사 정관 제51조에 의하여 감사의 보수한도를 아래와 같이 승인받고자 합니다.

전기 감사 보수 한도액 : 5억원

당기 감사 보수 한도요청액 : 5억원